

# 건설공사보험

CHUBB®



각종 토목 및 건축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공사 목적물, 공사용 자재 등에 발생한 물적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대인/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, 발주자, 시공자 등 건설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.

## 주요 보상하는 손해

### - 물적손해

- 공사수행중의 작업 잘못
- 종업원 또는 제 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
- 화재 및 벼락, 폭발 또는 파열
- 누전, 핵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
- 도난
- 지면의 내려앉음, 사태, 암석붕괴
- 폭풍우, 흉수,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 현상
-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
- 기타 약관 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손해

### - 제 3자 배상책임손해

-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

##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

### - 물적 손해

-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, 파업, 폭동, 소요,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, 몰수로 인한 손해
- 핵반응, 방사선 또는 방사능 오염

-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나 그 대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
-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
- 벌금, 공사지연손해, 성능부족, 계약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간접손해
-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
- 재질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. 그러나 이 조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목적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결함 없는 다른 목적물이 입은 손해는 보상
- 마모, 침식,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
-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,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
- 일반도로 전용허가를 가진 차량, 수상수송 선박, 항공기의 손실 및 손해
- 서류, 도면, 계산서 청구서, 통화, 인지, 증거 서류, 화폐, 유가증권 및 수표의 분실 또는 손해
- 재고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
- 제 3자 배상책임손해
- 진동, 지지대 철거 또는 약화에 의한 손해 단, 특약으로 담보 가능
- 도급업자, 발주자 또는 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과 그들 가족의 상해 및 질병
- 도급업자, 발주자, 공사에 관련된 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들에게 속하거나, 보관, 보호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의 손해
- 일반도로용 차량,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
-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귀속되지 않는 배상책임으로서 합의에 의해 보상하는 배상책임

## 주요 특별약관

-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
-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
-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
- 진동, 지지대 철거 및 약화에 관한 특별약관

## 가입대상

- 건축, 구축물, 부대설비 등 공사목적물과 가설물
  - 주거용 건물, 상업용 건물, 산업용 건물
  - 도로, 철도, 공항 등
  - 맴, 터널, 교량 등 구조물
  - 상하수도, 하수처리시설, 관개시설 등
- 의무가입대상
  - (계약예규)정부입찰/계약집행기준 제55조에서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정한 공사

##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

- 공사개요서
-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
- 공사 일정표
- 배치도 및 설계도  
(단면도, 평면도, 굴착도 등)
- 주변현황도(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 포함)
- 지질조사보고서
- 기타 요청 자료

## 처브그룹 소개

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.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, 특종보험, 개인상해보험, 건강보험,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,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, 지급하고 있습니다.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, 가족,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, 광범위한 판매 채널,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.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, 특종보험, 리스크 관리 서비스, 고액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,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, 상해보험, 건강보험,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,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.

미화 1,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,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 재무능력 AA 등급을, AM Best의 A++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
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(Chubb Limited)는 뉴욕증권거래소(NYSE: CB)에 상장되어 있으며, S&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

처브그룹은 취리히, 뉴욕, 런던,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, 전 세계 약 34,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.

## Contact Us

라이나손해보험  
(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),  
처브그룹 컴퍼니  
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 
라이나타워 14, 15층  
대표번호: +82 2 2127 2400  
대표팩스: +82 2 6913 8498  
[www.chubb.com.kr](http://www.chubb.com.kr)

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 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,  
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.

재물보험부  
Property  
O +82 2 2127 2350  
E [Property.kr@Chubb.com](mailto:Property.kr@Chubb.com)

**Chubb. Insured.<sup>SM</sup>**

# 알아두실 사항

##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

### 계약 전 알릴 의무

계약자, 피보험자는 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(질문서를 포함합니다)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

###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그러지 않을 경우,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#### [예시]

-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,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
-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(예: 건물의 구조를 변경·개축·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,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)

회사는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###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

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(보험대상자)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, 보험기간, 보험료,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내용(약관)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청약의 철회

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6조, 동법 시행령 제37조,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(정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)에 정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.

다만,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.

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# [일반금융소비자]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

[전문금융소비자]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,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, 구체적인 범위는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# 계약의 취소

보험계약자는 청약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,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## • 계약취소 신청주소 : (03156) 서울특별시 종로구

삼봉로 48 라이너타워 14, 15층

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

(전화 : 02-2127-2400)

#### • 가까운 영업점 위치 : (03156) 서울특별시 종로구

삼봉로 48 라이너타워 14, 15층

(고객서비스센터)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 
주식회사(전화 : 02-2127-2400)

###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

보험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###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제한

#### 보험금의 지급

보험자는 지급보험금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지급을 중지합니다.

A.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

B.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중인 경우

#### 보험금의 지급 제한

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(이 일반 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.),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#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한 사항 (해지환급금 안내)

#### 계약의 해지사항
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.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

2.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(보험금을 받는 자)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

3. 계약자,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4.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

#### 계약의 해제사항

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,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,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(상법 제650조제1항).

보험계약이 효력상실,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리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.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으로 계산한 보험료

- 계약자,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

####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

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 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.

### 예금자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 보호됩니다. 다만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 계약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###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

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• 회사 전화번호 : 1566-5800(고객서비스센터)  
인터넷 주소 : [www.chubb.com.kr](http://www.chubb.com.kr)

•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  
([www.fss.or.kr](http://www.fss.or.kr)/국번없이 1332) /  
우) 150-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

###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

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, 보장내용(면책기간·재적용 등)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#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

계약자는 보험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적합성 원칙) 제3항, 제18조(적정성 원칙) 제2항, 제19조(설명의무) 제1항 및 제3항, 제20조(불공정영업행위금지) 제1항 또는 제21조(부당권유행위)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, 동법 제47조(위법계약의 해지)제1항,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,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(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)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다만,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·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
**Chubb. Insured.<sup>SM</sup>**